

부천시 아동·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12월 14일) 상정 수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족여성과장 손영숙)

□ 제안이유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, 성폭력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0261호, 2010. 4. 15. 공포·2011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령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”을 “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”로 제정된 법령 및 조번호 등을 정비함(안 제1조·제2조 및 제13조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는데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.	○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(이상 가족여성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- ‘교육청’을 ‘교육지원청’으로 개정하여 수정의결해야 함.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수정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아동·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76
의결 연월일	2010. 12. 14

제안년월일 : 2010년 12월 14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“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수정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“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수정함.(제6조제3항제4호)

부천시 아동·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아동·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
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3항제4호 중 “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.』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아동·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, <u>교육청</u> 등 교육기관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교육지원청</u> ----- <u>교육지원청</u> -----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부천시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”를 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4호 중 “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33조”를 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28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